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부, 한국관광진흥청>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16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한규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5.
3. 회부연월일 : 2024. 6.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방한 외래관광객은 1,750만명을 넘었으나 2021년에는 96만명으로 급감함. 이후 2023년에는 1,103만명 수준까지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침. 이에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관광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사무 중 하나로 포함되어 규정됨. 국내 관광산업이 미래 산업으로서 지닌 경쟁력과 가치를 고려할 때, 이러한 행정 조직상 구조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관광산업 정책 사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도록 하며,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

해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관광산업의 국가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부로 함(안 제26조).

나.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한국관광진흥청을 둠(안 제36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기능을 분리하여, 문화체육부 소속으로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한국관광진흥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 9. (생략) 10. <u>문화체육관광부</u> 11. ~ 19. (생략)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u>문화체육관광부</u> ·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제26조(행정각부)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 <u>문화체육부</u> 11. ~ 19. (현행과 같음) ② ----- ----- ----- ----- ----- <u>문화체육부</u> ----- ----- --.
제36조(<u>문화체육관광부</u>) ①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 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 <u>체육</u> · <u>관광</u> ,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u>문화체육관광부</u> 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	제36조(<u>문화체육부</u>) ① <u>문화체육부장관</u> ----- ----- <u>체육</u> ----- ----- -----. ② <u>문화체육부</u> ----- -----. ③ ----- ----- <u>문화체육부장관</u>

현행	개정안				
소속으로 국가유산청을 둔다. ④ 국가유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u><신 설></u> <u><신 설></u>	-----. ④ (현행과 같음) ⑤ <u>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한국관광진흥청을 둔다.</u> ⑥ <u>한국관광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 또는 한국관광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70%;">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사무</td><td style="width: 30%;">문화체육부장관</td></tr> <tr> <td>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된 사무</td><td>한국관광진흥청장</td></tr> </table>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사무	문화체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된 사무	한국관광진흥청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사무	문화체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된 사무	한국관광진흥청장				

현행	개정안
	화체육관광부령은 문화체육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령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광이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상 생활권을 떠나 여가, 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여행을 하거나 머무르는 사람의 활동을 말함. 관광 활동에는 장거리 교통, 숙박, 식음료 등 여행 중에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포함되며, 관광객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산업은 외화획득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 국민소득 창출, 고용확대, 재정수입의 증대, 지역경제 개발 등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¹⁾.

1) 정미진, “한국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0, p5. 16.-19. 참고, 이강욱, 류광훈,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관광연구원, 1999, p.3. 참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세계 관광산업이 침체기에 들기 이전인 2019년도의 세계관광통계를 살펴보면,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 외래관광객 수 상위 10개국은 연간 3,940만~9,090만 명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여, 246억~1,990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올렸음. 우리나라는 외래관광객 수 순위에서 26번째에 해당하는데, 1,750만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연간 관광수입은 약 209억 달러였음.

[코로나19 유행 이전(2019년) 세계관광통계 현황]

(단위: 만명, 백만USD)

순위	국가명(또는 지역명)	외래관광객	관광수입
1	프랑스	9,090	63,500
2	스페인	8,350	79,700
3	미국	7,940	199,000
4	중국	6,570	35,800
5	이탈리아	6,450	49,600
6	튀르키예	5,120	29,800
7	멕시코	4,500	24,600
8	태국	3,990	59,800
9	독일	3,960	41,800
10	영국	3,940	52,700
⋮	⋮	⋮	⋮
12	일본	3,190	46,100
14	말레이시아	2,610	19,800
17	홍콩	2,380	28,900
22	마카오	1,860	40,100
23	베트남	1,800	11,800
26	대한민국	1,750	20,900

※자료: 한국관광공사 세계관광통계(<https://datalab.visitkorea.or.kr>)

*주- 순위는 외래관광객 다수 순 / 상위 10개국과 대한민국 순위 이상의 아시아 지역 기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간 관광통계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전후의 우리나라 관광 현황을 살펴보면,

관광인구 측면에서는 2023년 기준 방한 외래관광객(1,103만 명)은
2019년(1,750만 명)의 63% 수준임에 비해, 2023년 우리 국민 해외관광객
(2,272만 명)은 2019년(약 2,871만 명)의 79% 수준으로 방한 외래관광객에
비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수지 측면에서도 2023년 관광수입(151억 달러)은 2019년(207억 달러)의
73% 수준임에 비해, 2023년 관광지출(250억 달러)은 2019년(293억 달러)의
85% 수준으로 관광수입에 비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2023년의 연간 관광수지 적자(99억 달러)는 2019년(85억 달러) 대비 13억
달러 증가하였음.

[우리나라 연간 관광통계 현황(2018~2023년)]

(단위: 만명, 백만USD,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방한 외래관광객	1,535	1,750	252	97	320	1,103
비고						19년의 63%
국민 해외관광객	2,870	2,871	428	122	655	2,272
비고						19년의 79%
관광수입	18,462	20,745	10,181	10,623	12,240	15,112
비고						19년의 73%
관광지출	31,528	29,261	13,356	14,951	17,956	24,971
비고						19년의 85%
관광수지	-13,066	-8,516	-3,175	-4,329	-5,715	-9,859
비고						적자 폭 13억 달러 확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센터(<https://stat.mcst.go.kr>)

*주- 2023년 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는 잠정치

관광경제 규모의 성장과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방한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늘리고, 우리 국민의 해외 관광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023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관광발전지수²⁾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119개 평가대상 국가 중 14위를 기록하였는바,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이나, 외래관광객 유치에 있어 경쟁상대가 될 수 있는 일본, 중국 등 인접국가가 우리나라 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어, 평가 내용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부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임³⁾.

[2023 세계경제포럼 발표 관광발전지수 현황]

순위	변동	국가	순위	변동	국가
1	(-)	미국	21	(↑5)	그리스
2	(-)	스페인	22	(↑14)	인도네시아
3	(-)	일본	23	(-)	벨기에
4	(↑2)	프랑스	24	(↓3)	아일랜드
5	(↑2)	호주	25	(↓5)	뉴질랜드
6	(↓1)	독일	26	(↑8)	브라질
7	(↓3)	영국	27	(↑3)	폴란드
8	(↑1)	중국	28	(↓4)	룩셈부르크
9	(↑3)	이탈리아	29	(↑8)	튀르키예

2) 세계경제포럼은 세계 국가의 여행·관광 경쟁력을 평가하고, 국가 간 벤치마킹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격년으로 ‘관광경쟁력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2021년에는 기존 관광경쟁력지수에서 ‘관광의 지속 가능성’ 분야 평가 등을 확대하여 ‘관광발전지수’로 개편하였음.

3)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관광 발전 세계 119개국 중 14위 기록”, 2024.5.27.

순위	변동	국가	순위	변동	국가
10	(↓2)	스위스	30	(↓3)	키프로스
11	(↓1)	캐나다	31	(↑4)	칠레
12	(↑1)	포르투갈	32	(↓10)	아이슬란드
13	(↓2)	싱가포르	33	(↓2)	체코
14	(-)	대한민국	34	(↑4)	몰타
15	(-)	오스트리아	35	(↓7)	말레이시아
16	(↑1)	네덜란드	36	(↑4)	에스토니아
17	(↓1)	덴마크	37	(↑5)	헝가리
18	(↑7)	아랍에미리트	38	(↓6)	멕시코
19	(-)	스웨덴	39	(↓10)	인도
20	(↓2)	핀란드	40	(↓1)	불가리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관광 발전 세계 119개국 중 14위 기록”, 2024.5.27.

*주- 변동은 2019년 대비 순위 변화

음영표시는 대한민국 순위 이상의 아시아 지역

[2023 세계경제포럼 발표 관광발전지수 우리나라 분야별 현황]

분야 (5)	환경 조성	관광정책 및 기반조성	인프라 및 서비스	관광 자원	관광의 지속가능성
	20위(1↑)	61위(3↑)	26위(1↓)	15위(-)	16위(33↑)
부문 (17)	기업 환경	관광정책의 우선순위	항공 운송 인프라	자연 자원	환경 지속가능성
	안전 및 보안				
	보건 및 위생	관광개방성	육상·항만 운송 인프라	문화 자원	관광의 사회경제적 영향
	인적자원 및 노동시장				
	정보통신기술 준비 수준	가격경쟁력	관광객 서비스 및 인프라	비레저 자원	관광 수요 지속가능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관광 발전 세계 119개국 중 14위 기록”, 2024.5.27.

*주- 변동은 2019년 대비 순위 변화

현재 관광에 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관광 분야 담당 중앙행정기관이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등 사무를 함께 관장⁴⁾하고 있어 관광 분야 관련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한 다양한 부처에서 관광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관광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⁵⁾.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사무를 분리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농어촌관광⁶⁾, 정원관광⁷⁾, 갯벌생태관광⁸⁾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다양한 관광 업무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정부조직법」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④ (생략)

5) 김근중, “한국의 관광청 설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식산업학회지 제17권제2호 통권51호, 한국외식산업학회, 2021, p.101., p.104-106. 참고

6) 「농어촌정비법」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7)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운영 및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4. (생략)

5.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정원관광, 정원문화 및 정원치유사업

6.~7. (생략)

② (생략)

8)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7.~8. (생략)

다만, 관광 분야 담당 기구의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관광부 또는 관광청으로 독립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 반면, 문화, 예술, 스포츠 또는 경제나 산업통상을 관장하는 부처에서 관광 분야를 함께 담당하거나, 정부 부처가 아닌 산하 공공기관에서 관광 분야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독립기관으로서 관광청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관광산업과 항공·철도·도로 등을 통한 국내외 접근성과의 밀접성을 고려하여 일본의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⁹⁾도 있는바,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여러 해외 사례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우리 여건에 보다 부합하는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관광 분야 담당 기구의 국외 사례]

형태		국가	담당기관	특징
정부 부처 형	관광 독립 형	이탈리아	관광부	- 관광부 독립
		이스라엘	관광부	- 관광부 독립
		일본	관광청	- 국토교통성 소속
	부처 소속 형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	- 문화부처 소속 - 지방정부차원에서 독립적으로 관광정책 수립 및 홍보
		중국	문화여유부	- 국가여유국(관광 단독) → 문화여유부 통합('18년) *문화산업과 연계된 관광 구현 목적
		터키	문화관광부	- 문화 분야와 병립 형태

9) 김근중, “한국의 관광청 설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식산업학회지 제17권제2호 통권51호, 한국외식산업학회, 2021, p.101., p.106. 참고

형태		국가	담당기관	특징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 예술문화 분야와 병립 형태
		프랑스	외무부	- 경제부와 병립 체계
		독일	연방경제기술부	- 경제부처 소속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 산업통상과 병립
산하 기관형		미국	관광청	- 정부 부처가 아닌 산하기관 *우리나라의 한국관광공사와 유사한 형태
		싱가포르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		

※자료: 행정안전부

*주- 2022.3. 기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관광산업은 콘텐츠 측면에서 문화·예술·체육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된 분야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로서 관광진흥·개발 정책을 총괄하고, 관계 부처는 관광 인프라 관련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부처 간 정책 협력·조정 기능을 담당¹⁰⁾

10) 「관광기본법」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기능)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2.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관광 분야에 관한 관련 부처 간의 쟁점 사항
4.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의장) ① 전략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③ (생략)

제4조(구성원) ① 전략회의는 의장 이외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련 부처의 장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

하고 있는데, ‘관광청’ 신설 시 시너지 효과가 약화될 우려도 있으므로 관광 진흥정책의 효과적인 수행 방안 및 주요 국가 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은 출입국·비자·항공·교통·숙박·문화·콘텐츠·식음료·생태·환경·산림·해양 등 다양한 부처의 정책이 연계되어 있는 종합산업에 해당하여,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 국제협력 등이 중요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한 K-컬처 등 문화·체육·관광 연계 강화가 필수적인바, 관광산업 진흥에 효과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9

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전략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된다.

② (생략)

제9조(차관조정회의) ① 의장은 전략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략회의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전략회의가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관련 부처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며, 구성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